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68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7. 15.

주 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2018. 8. 28. 체결된 6,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29.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19. 체결된 10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국세채납자이고, 피고는 강의 남편이다.

나. 강이 체납한 국세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강은 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 토지 및 건물을 2018. 8. 29.

조에 4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조는 매매대금으로 2018. 8. 27. 10,000,000원을, 2018. 8. 29. 90,000,000원을, 2018.

9. 19. 강의 근저당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112,153,582원을 강에게 지급하였다.

마. 강은 피고에게 2018. 8. 28. 6,000,000원을, 2018. 8. 28. 90,000,000원을, 2018. 8.

29. 102,000,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강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강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이체한 경위, 출처, 액수에 비추어 보면, 강이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생활비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이 1,000,000,000원 이상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748,000,000원에 달하고, 원고의 조세채권 합계액이 725,307,350원인 것을 고려하면, 강은 위 각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